총회 역사자료관 운영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운영세칙은 한국기독교장로화총회 역사자료관(이하 "역사자료관")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시업)

역사자료관은 총회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활용한다.

- 1. 총회 모든 기록물, 교단 대와해외 관계 기록물, 총회 산하기관 중요 기록물, 노회 중요 기록물 및 발간된 교회사 등을 수집 보존하며 정보를 제공한다.
- 2. 총회가 소장한 기록물을 홍보 전시한다.
- 3. 총회가 지정한 유적교회, 유물, 인물, 문화유산 등의 자료를 관리 보존한다.
- 4. 주제별로 역사 자료를 수집, 연구하고 학술행사 등을 통해 교단역사 정립을 위해 노력하다.
- 5. 산하기관 및 노회, 교회의 역사편찬을 지원한다.

제3조 (기록물에 관한 직무)

역사자료관은 총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총회 내 모든 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수집 및 이관받아 보존관리한다.
- 2. 기록물의 보존관리 방안을 연구개발한다.
- 3. 소장 기록물의 열람 편의 제공 및 전시 활동을 한다.
- 4.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, 교육한다.
- 5. 기타 총회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 (조직)

- 1. 역사자료관은 관장 1인, 실장 1인, 실무자 1인 이상을 두되 관장은 총회총무가 당연직으로 실장은 선교사업국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.
- 2. 역사자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본부 소속으로 전문 인력과 기타 필 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5조 (역사자료관 기록관리 소위원회)

총회 역사자료관 기록관리 소위원회(이하 "기록관리 소위원회")를 구성하여 총회본부 및 산하기관의 기록물을 수집, 관리하고 총회 역사위원회에 보고한다.

- 1. 기록관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총무(관장)로 하며 위원은 총회본부 국부장과 사하기관장으로 하다.
- 2. 총회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3. 기록관리 소위원회는 기록물의 수집, 보존, 공개, 교육, 이관,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위원회에 보고하다.

제3장 운 영

제6조 (역사자료관 수집 및 협조)

- 1. 역사자료관장은 각 행정부서의 기록물 중 영구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 물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수집 또는 열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2. 총회 내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해당 기관에서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역사자료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각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 총회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역사자 료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3. 총회 기록물 중 단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역사자료관에서 지속적으로 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기증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.

제7조 (정리 및 보존)

역사자료관장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수집된 역사기록물의 정리 및 보존에 관하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이를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.

제8조 (이용 및 열람)

- 1. 역사자료관의 개폐 시간은 총회본부 처무 규정에 따른다.
- 2. 역사자료관의 기록물 열람은 비공개 대상 기록물을 제외하고, 역사자료관장의 허락을 받아 교단 신도 및 일반인 등이 열람할 수 있다. 단, 기록물을 열람하고자하는 사람은 열람 신청을 해야 한다.
- 3. 역사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관외 대출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이용자가 필요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관내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수 있다.
- 4. 기록물 보존서고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,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
- 5. 역사자료관은 전산으로 소장목록을 작성, 비치하는 등 이용자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조 (전시 및 행사)

역사자료관은 필요시 소장기록물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기획개최할 수 있고, 관련 행사 등을 주관할 수 있다.

제4장 개정 절차

제10조 (개정)

이 운영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09년 9월 제94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